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(대표발의: 권영숙 의원)

의 안 번 호 ²⁴⁻¹⁸

발의년월일 : 2024. 2. .

발 의 자:고병준, 권영숙, 김승수,

남해석, 장정희, 채우진

1. 제정이유

관내 일정 지역을 문화거리로 지정 및 지원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 문화를 발전시켜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
나. 문화거리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3조, 안 제4조)

다. 위원회의 구성, 기능, 회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안 제7조)

라. 주민협의회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마. 운영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9조, 안 제10조)

3. 관계법령

- 1)「지방자치법」제13조
- 2)「지역문화진흥법」제3조, 제4조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입법예고: 2024. 2. 13. ~ 2. 19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 일정 지역을 문화거리로 지정하여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포구 문화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문화거리"란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.
- 제3조(문화거리 지정) ① 문화거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포구 관내 일정 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서울특 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지정한다.
 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거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주변의 문화적 시설, 구민의 이용도, 문화적 파급 효과,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.
 - ③ 구청장이 문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.
- 제4조(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) ① 구청장은 특정 지역의 문화거리 지정을

- 위해 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해당 계획의 명칭은 "O
- O 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"이라 한다. 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
-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
 - 가. 문화예술 관련 공연시설, 전시시설 및 부대시설
 - 나. 문화예술 관련 주민공동이용시설
 - 다. 조각. 벽화 등의 문화 환경 조형물
 - 라.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
- 2.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주변 환경개선, 주민협의회 구성 등 문화거리 조성 및 관리에 과한 사항
- 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구청장은 문화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 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거리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각 문화거리별 비상설로 운영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 - ④ 당연직위원은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마포구의회 의원과 문화예술관 런 업무 담당국장, 위촉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그 밖에 풍 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·위촉하되 민간 전문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.

- 제6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문화거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 - 1. 문화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
 - 2. 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- 3. 문화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의 문화거리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- 제7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④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- **제8조(주민협의회)** ① 문화거리 안의 주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.
 - 1. 문화예술관련 지역 의견수렴
 - 2. 지역 축제 및 문화예술활동 활성화
 - 3. 문화거리 환경 및 경관 개선
 - 4. 문화시설 또는 문화관련 영업시설의 보호 및 육성

- 5. 그 밖에 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
- ② 제1항의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주민협의회의 세부적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.
- 1. 문화거리 안의 문화시설 또는 문화관련 영업시설의 대표자
- 2. 문화거리 내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
- 3. 문화거리 내 주소지를 둔 주민
-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주민협의회가 원만히 구성되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- 제9조(운영의 위탁) 구청장은 문화거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정된 문화거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제10조(지원) 구청장은 문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1. 문화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및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 행사비
 - 2. 문화거리 안의 환경개선, 주민협의회 운영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계법령】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, 타법개정]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
- 가. 어린이집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·운영·지도
- 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다. 지방문화재의 지정・등록・보존 및 관리
- 라. 지방문화 예술의 진흥
- 마. 지방문화 · 예술단체의 육성

【관계법령】

지역문화진흥법

[시행 2022. 7. 19.] [법률 제18780호, 2022. 1. 18., 일부개정]

제3조(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- 1.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
- 2.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
- 3.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
- 4.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레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제5조(위원회의 구성)
- 제8조(주민협의회)
- 제10조(지원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: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

| 작성자 이름 | 관광경제국 문화예술과 정혜민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연 락 처 | 02-3153-8355 |